

	창업교육센터규정	규정번호	3-7-30
		제정일자	2014.02.01.
		개정일자	2025.06.01.
		개정차수	1차
		소관부서	산학협력처 (창업교육센터)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안산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창업교육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는 대학생들의 창업교육 활성화를 통한 청년 창업 확대를 위해 다양한 창업교육과 학생참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지원 활동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)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담당한다.

1. 창업교육 및 학생창업 장려를 위한 정책 기획 및 연구
2. 창업교육 및 학생창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정 제정 및 관리
3. 창업교육 정규교과목 개설 및 운영 지원
4. 창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생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
5. 창업교육센터-창업보육센터 연계 사업

제2조의2(창업동아리) ① 창업동아리는 창업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창업 아이템을 기획하고 시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② 창업동아리는 단독 또는 팀으로 구성하고, 지도교수를 둔다.

③ 창업동아리는 다음 각 호의 창업 관련 활동을 한다.

1. 창업 아이템 기획 및 시제품 개발
2. 교내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
3. 창업 관련 정부사업 참여
4. 그 밖의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

[본조신설 2025.06.01.]

제2장 조 칙

제3조(구성)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전담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② 센터장은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센터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.

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특별한 사유로 임기 만료 전에 그 직에서 물러날 경우는 총장이 후임자를 선정하여 임명한다.

제4조 삭제 <2025.06.01.>

제5조(연구원 및 연구조교) ① 센터는 필요에 따라, 연구업무 수행을 위해 연구원 및 연구조교를 둘 수 있다.

② 연구원 및 연구조교는 연구과제에 대한 진행과 이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.

③ 삭제 <2025.06.01.>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6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

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고,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
⑤ 위원회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운영에 관한 사항
2. 예산, 결산에 관한 사항
3. 연구에 관한 사항
4. 사업 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
5. 기타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4장 보 칙

제8조(세부사항)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 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5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